

(사)대한민국항공회 개인회원 대의원 모집 공고

정관 제23조,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(사)대한민국항공회 분과별 개인회원들을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합니다.

- 아 래 -

□ 분과별 대의원 공모 안내

- 공모기간 : 2018. 1. 9(수). ~ 2. 8(금). 09:00 ~18:00
- 모집현황 : 총 16명

구 분	분과위별 회원수	분과위별 대의원 수
계	227 명	9 명
패러글라이딩분과위원회	153 명	7 명
행글라이딩분과위원회	72 명	3 명
경량항공기분과위원회	1 명	0 명
일반항공분과위원회	1 명	0 명

* 회원수 기준은 2018년12월31일 기준

* 각 분과위원회별 대의원 수는 정관 제24조 2항에 의거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(다만, 개인회원이 직접 추천을 받아 신청을 하여야 유효한 대의원이 될 수 있으므로 최종 대의원수는 추천선발된 개인회원 만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)

* 개인회원은 복수 추천 불가

* 분과별 최대 대의원수는 10명이므로 선착순으로 결정

□ 대의원 자격조건 : 관리행사일 2월14일

- 대의원의 자격 : 2019년 2월14일 기준으로 항공회 년회비를 납부한 분과별 개인회원

* 항공회에 등록된 유효한 개인회원 2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함
(단, 분과별 개인회원으로 한정)

□ 개인회원명부 열람

- 열람기간 : 2018. 1. 9(수). ~ 2. 8(금). 09:00 ~18:00
- 열람장소 : 서울시 중구 통일로26(봉래동1가) 한일빌딩 702호
(* 명부 열람은 지정장소에서만 가능하며, 복사 및 교부는 불가)

□ 접수방법 : 방문, 팩스, 이메일 접수

- 관련서류 : 대의원 신청서(첨부파일 참조)
- 방문접수 : 서울시 중구 통일로26(봉래동 1가) 한일빌딩 702호
- 팩스접수 : 02-412-6115
- 이메일접수 : fka@fkaero.or.kr

□ 관련문의

- 02-318-0059/ 강경환팀장

※관련근거 :

제23조(대의원의 자격)

- ① 대의원은 총회 공고일 현재 항공회의 분과위원회 및 가맹단체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 한다.
- ②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2주 이내에 항공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24조(대의원의 수)

- ① 가맹단체에서는 항공회에 등록된 유효회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.
단, 등록된 유효회원이 50명 미만인 가맹단체는 대의원을 1명만 선출할 수 있다.
- ② 개인회원은 항공회에 등록된 유효한 회원 2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.
- ③ 종목별 대의원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각 가맹단체는 소속 유효회원의 명부를 매 분기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항공회에 제출해야 한다.